

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

(의견서 번호 : 24-40)

기관 및 부서명	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
건 명	하수도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재산정 관련

1. 사업 개요(추진일정 등)

□ 배경 및 신청사유

- 「하수도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이설·보수·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등의 설치공사(이하 “타공사” 라고 함)나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(이하 “타행위” 라고 함)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,
- 「하수도법」 제61조 제3항 위임에 따라 제정된 舊「○○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(경기도○○시조례 제1995호, 2019. 12. 13.)(이하 “○○시 조례” 라고 함) 제24조 및 舊「○○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(경기도○○시규칙 제919호, 2018. 5. 14.)(이하 “○○시 시행규칙” 이라고 함) 제24조에 따르면, 원인자부담금은 ‘하수발생량’에 ‘단위단가’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, ‘하수발생량’은 환경부 고시인 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」(이하 “환경부 고시 산정방법” 이라고 함)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
- 학교법인 □□대학교에서 추진한 ○○△△병원 신축공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○○시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 사업으로서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 등을 수반하는 타행위임에 따라,
- ○○시는 환경부 고시 산정방법(환경부고시 제2019-215호, 2019. 11. 25.) 제4조 가목에 따라 <별표>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였음
- 그런데, 학교법인 □□대학교에서 해당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법원에서는 해당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
- 이에 ○○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고자 하는데, 학교법인 □□대학교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 완성시기 및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

□ 관련법령

- 「하수도법」 제61조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5조
- 「○○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4조(경기도○○시조례 제1995호, 2019. 12. 13.)
- 「○○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24조(경기도○○시규칙 제919호, 2018. 5. 14.)
- 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」

2.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

-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 완성시기 및 하수발생량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

3. 검토의견

- 이 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○○시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 사업으로 학교법인 □□대학교(이하 “이 건 사업자” 라고 함)에서 추진한 ○○△△병원 신축공사(이하 “이 건 사업” 이라고 함)와 관련하여,
 - ○○시가 이 건 사업자에게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(원인자부담금 과다 산정)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(이하 “이 건 판결” 이라고 함)에 따라,
 -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 완성시기 및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안임
- 우선,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 완성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, 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,
 - 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상당하고, 그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완공시까지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완공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,
 -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 완성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완공 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(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두6231 판결,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두2612 판결 참조),
- 이 건 판결문을 살펴보면, 舊○○시 조례(경기도○○시조례 제1995호, 2019. 12. 13.) 제24조 제4항에서 “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·허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”고 부과시기를 규정하여 두고 있다면 이는 부과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때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시점 이후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,
 - 부과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, 이 사건 처분이 훈시규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실시하고 있음
-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, 환경부 고시 산정방법(환경부고시 제2019-215호, 2019. 11. 25.) 제4조 나목에 따르면,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,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·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,
 - 이 건 판결에 따르면 이 건 사업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주요 이유가 실제 하수발생량 및 하수발생 예측량 대비 ○○시에서 산정한 하수발생량이 과다함에도 충분한 심사 등의 검토가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,

- ○○시는 이 건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재산정 시 실제 하수발생량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·예측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하수발생량으로 하여 이 건 사업 완공(준공) 시점의 단위단가를 곱한 값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

■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,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